

IFRS in Focus

IFRS 해석위원회, 부담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해석서 초안 발표

목차

- 배경
- 적용범위
- 제안사항
- 시행일과 경과규정

요점

- 이번 제안사항은 부담금(levy)을 지급하여야 할 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식별된 부담금의 지급을 유발하는 활동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경제적 강제(economic compulsion)과 계속기업(going concern) 원칙 모두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제의무를 발생시키거나 의제의무가 존재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 부채와 관련 비용은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만 점진적으로 인식한다.
- 이번 제안사항은 소급적으로 적용한다.
- 의견수렴기한은 2012년 9월 5일이다.

배경

2012년 5월 31일 IFRS 해석위원회(이하 'IFRS IC')는 해석서 초안인 D/2012/1 '공공기관이 특정시장에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Levies Charged by Public Authorities on Entities that Operate in a Specific Market)'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해석서 초안은 특정일에 기업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부담금을 언제 부채로 인식하여야 할지를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

For more useful information please see the following website:

www.iasplus.com
www.deloitte.com

해석서 초안은 다음의 논점을 다루고 있다.

-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할 부채를 발생시키는 의무발생사건은 무엇인가?
- 미래기간에 영업활동을 계속 수행하도록 경제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경우 미래기간에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제의무를 발생시키는가?
- 계속기업 원칙은 기업이 미래기간에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할 현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가?

적용범위

해석서 초안은 IAS 12 '법인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담금의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다. 또한 해석서 초안의 적용범위는 교환대상이 없는 거래(non-exchange transaction, 예를 들어 부담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부담금 지급과 교환하여 직접적으로 특정 자산이나 서비스를 수취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부담금에 한정되며, 최소수익기준(minimum revenue threshold)이 달성되는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있는 부담금, 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논평

해석서 초안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부담금의 사례로 연차보고기간 말에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과 연차보고기간 개시일에 기업이 특정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프랑스의 세금(C3S)을 들 수 있다. 영국의 은행부담금은 보고기간 말의 자본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근거로 측정되며 프랑스의 C3S 세금은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수익 중 일정비율로 계산된다.

제안사항

해석서 초안은 부채 인식과 관련하여 다음의 기본 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 부채의 인식을 야기하는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따라 식별되는 부담금의 지급을 유발하는 활동이다.
- 기업이 미래기간에 영업활동을 계속 수행하도록 경제적으로 강제되어 있더라도 미래기간에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 계속기업 원칙은 미래기간에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금을 보고일 현재의 부채로 인식하여야 할 지의 여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 현재의무를 발생시키는 활동이 일정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예를 들어, 법규에 따라 식별되는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에 해당되는 경우) 의무발생사건은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 해석서 초안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부채를 인식하는 시점에 비용을 인식한다.

상기에서 개관된 인식 원칙은 연차재무제표와 중간재무제표 모두에 적용된다. 그 결과 중간재무제표에는 중간재무보고기간 말에 부담금을 지급할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상 부담금 비용이 중간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며, 부담금을 지급할 현재의무가 중간재무보고기간 말에 존재한다면 부담금 비용은 이연되지 않을 것이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해석서 초안은 시행일을 특정하지 않는다. IFRS IC는 의견제출자들로부터 수령한 해석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고려한 후 시행일을 결정할 것이다.

해석서 초안은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한은 2012년 9월 5일이다.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및 Deloitte member firms는 본 출판물에 근거한 결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